

#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 1. 소위원회 구성의 목적

-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 구조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그 동안 꾸준히 요구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포함하였고, 2020년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안’ 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정원 조례개정안’ 를 개정해 자치경찰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하지만, 자치경찰의 독립적 조직 신설을 요구했던 지방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기존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경찰청장),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로 나눠 지휘·감독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경찰 추진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차질 없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
강동길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 3. 소위원회 활동기간

- 소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로 함(2021. 3.2. ~ 2021. 6. 30.)

## 4. 소위원회 활동 범위 및 요지

- 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안,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검토 등 제도화 논의
- 조직구성, 인력 확보, 예산분담 등 안정적 자치경찰 운영 방안
- 그 밖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
- 기타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5. 소위원회 활동계획 : 붙임 참조

붙임

## 활 동 계 획 안

일 정	활 동 내 용	대 상	비 고
2021. 3. 2 ~ 2021.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회 간담회</li> <li>- 자료 요구 및 분석</li> <li>- 세부 활동계획 수립</li> <li>- 제1차 업무보고</li> <li>- 조례안 검토 및 협의</li> <li>- 조례안 공청회 개최</li> </ul>		제300회 임시회 4.19 ~ 5. 4
2021. 5. 1 ~ 2021.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업무보고</li> <li>- 간담회 개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 서울시 경찰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li> <li>- 서울시 경찰청</li> <li>- 관련 분야 전문가</li> </ul>	
2021. 6. 1 ~ 2021.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업무보고</li> <li>- 소위원회 간담회</li> <li>- 현장방문 (자치경찰사무국 등)</li> <li>- 보고서 정리</li> <li>- 상임위원회 보고</li> </ul>		제301회 정례회 6.10 ~ 6.30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